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 (간사등) ① (생략)</p> <p>② 간사는 <u>새마을과장</u>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8조 (시행세칙) (생략)</p>	<p>제7조 (간사등) (현행과 같음)</p> <p>② <u>사회진흥과장</u></p> <p>.....</p> <p>제8조(위원의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예산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다만, 군소속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9조(시행규칙) (현행 제8조와 같음)</p>

서산군수입증지조례증개정조례안

서산군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중 "(판매인의 지정)"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과 판매인 지정)"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증지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을 "군수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관리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증지는 군수가 지정한 판매인"으로 한다.

제23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